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43
----------	-----

2024. 7. 22.(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7월 15일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가. 제안이유

- 학교 신설과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 1) 지방공무원 총수: 3,462명 → 3,480명 (+18명)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118명 → 3,136명 (+18명)

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안 별표3)

- 1) 지방공무원 총계: 3,462명 → 3,480명 (+18명)
 - 일반직 계: 3,107명 → 3,125명 (+18명)
 - 5급 이하 소계: 3,067명 → 3,085명 (+18명)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¹¹⁾, 제20조에¹²⁾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
- 11)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12)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주요 내용으로 학교 신설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학교의 교육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462명에서 3,480명으로 18명 증원하려는 것임

구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별정직	합계
현행	1	3,107	12	335	7	3,462
개정안	1	3,125	12	335	7	3,480
증감	-	+18	-	-	-	+18

- 세부 증원 내역을 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설예정 학교의 설립사무를 위해 (가칭)오송2초 등 7개교에 16명, 중증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2개교(진흥초, 사직초)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사업명	증원인원	세부내역
1	(가칭)오송2초 [개교 '25.3]	2	· (배정 정원 5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교행8급 2, 시설관리 1 - (증원 2) 24.11. 교행 설립사무 2 / (재배치 3) 25.3. 교행 2, 시설관리 1
2	(가칭)오송2중 [개교 '25.3]	3	· (배정 정원 4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교행8급 1, 시설관리 - (증원 3) 24.11. 교행 설립사무 2, 25.3. 교행 1 / (재배치 1) 25.3. 시설관리 1
3	(가칭)동남중 [개교 '25.3]	3	· (배정 정원 4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교행 8급 1, 시설관리 1 - (증원 3) 24.11. 교행 설립사무 2, 25.3. 교행 1 / (재배치 1) 25.3. 시설관리 1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연번	사업명	증원 인원	세 부 내 역
4	(가칭)단체교 [개교 '25.3]	2	· (배정 정원 3명) 교행6급 1, 교행8급 1, 시설관리 1 - (증원 2) 24.11. 교행 설립사무 2, (재배치 1) 25.3. 시설관리 1
5	(가칭)오송3초 [개교 '25.9]	2	· (배정 정원 5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교행8급 2, 시설관리 1 - (증원 2) 25.5. 교행 설립사무 2 / (재배치 3) 25.9. 교행 2, 시설관리 1
6	(가칭)화곡초 [개교 '25.9]	2	· (배정 정원 4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교행8급 1, 시설관리 1 - (증원 2) 25.5. 교행 설립사무 2 / (재배치 2) 25.9. 교행 1, 시설관리 1
7	(가칭)상당유 [개교 '26.3]	2	· (배정 정원 3명) 교행6급 1, 교행7급 1, 시설관리 1 - (증원 2) 25.11. 교행 설립사무 2 / (재배치 1) 26.3. 시설관리 1
8	중증장애인 근무 지원	2	- (증원 2) 24.9.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교행 8급 2) *진홍초, 사직초
	증 원	18	* 신설학교 필요 인력 28명 / 증원 16명 / 재배치 12명 *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 증원 2명

○ 직급별 증원 인원은 6급 8명, 7급 9명, 8급 1명이며 지방공무원 전체 인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범위 내^{아래 표 참조}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1.5% 이내	8% 이내	31% 이내	40% 이내	19% 이상	0.5% 이내

- 6급 8명 증원 시 총 인원 758명 22% (758/3,480명)
- 7급 9명 증원 시 총 인원 1,145명 33% (1,145/3,480명)
- 8급 1명 증원 시 총 인원 1,061명 30% (1,061/3,480명)

○ 또한, 일반직 정원 18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23년 집행을 94.74%에서 0.52% 증가한 96.52%로 총액인건비 교부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부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10년^{2013~2023년} 동안 학생 수는 205,298명에서 169,165명으로 36,133명이 지속적으로 감소^{연 3,613명}하고 있는 반면, 직원 수는 최근 5년^{2019~2024년} 동안 3,235명에서 3,480명으로 245명이 지속적으로 증가^{연 49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신설 예정 학교의 필요 인력은 총 28명이지만 증원 인원은 16명으로 추가 필요 인력 재배치 12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 중증 장애인 직원 ^{붙임1 참조} 근무 지원을 위한 행정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 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활동법)」 ^{붙임2 참조}에 따라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바, 지원 행정 인력 증원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 중증 장애인 직원 채용에 따른 학교 정원배치기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붙임 1

□ 정원 조례 증원 대상 중증장애 공무원 현황

순	소속기관	직급	현 부서 근무기간	장애 유형	보조 지원여부	인적사항
1	사직초 (교육행정 3명)	교육행정 8급	2년 7개월	지체 장애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출퇴근 및 근무시간)	정규 임용 이후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이며, 신체 전부가 움직임이 어려움 (입으로 키보드 작성)
2	진흥초 (교육행정 3명)	교육행정 9급	4년 6개월	지체 장애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출퇴근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체의 불편함으로 업무 수행이 매우 곤란함

※ 사직초 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매칭된 근로지원 인력이 없어 활동지원사가 업무 보조중

붙임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 (19조의 2) **“근로지원인”** 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2조의 2)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1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분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관계법령 (소관부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지원(분야) 내용	일상생활과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 ※ 일상생활: 이동 및 식사 보조 ※ 부수적 업무: 전화연결, 서류넘김, 단순 문서 작업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근무시간	근무시간 내 업무 보조(출퇴근 지원 불가)	근무시간 외 일상 지원(출퇴근 지원 가능)
신청방법(주체)	중증장애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 신청	중증장애인이 주민센터 에 신청
기타사항	시간당 300원 본인부담금 발생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62명” 을 “3,48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18명” 을 “3,13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80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25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85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35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462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118명</u>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335명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480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3,136명</u> ----- 3. (현행과 같음)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총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462</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감</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10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22</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9</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이하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06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3</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사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전문직원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3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 style="text-align: center;">38</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7</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 style="text-align: center;">29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 상당</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 이하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62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07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67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35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총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48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감</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12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22</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9</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이하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08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3</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사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전문직원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335</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 style="text-align: center;">38</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7</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 style="text-align: center;">29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 상당</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 이하 소계</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80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25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85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35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62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07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67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35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80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25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85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35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18명(일반직 18명)에 대한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4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산출기초	연도별 인건비 추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 정규직인건비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가. 일반직(24.확정단가 79,861천원×18명)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 2024년 비용추계 기간: 2024년 9월 ~ 12월

※ 처우개선을 적용(2.5%)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장 박영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입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보통교부금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세출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정규직인건비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재원 조달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의존 재원	소계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79,166	1,473,435	1,510,271	1,548,028	5,010,9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